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53

제안년월일 : 2025년 12월 22일
제 안 자 : 운 영 위 원 장

1. 수정이유

○ 시민 공개 가능 자료에 대한 온라인 열람 근거를 자료 열람을 규정하는 조문에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질서 준수 의무와 사무처장의 이용 제한 규정의 행위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 대상 온라인 열람 가능 자료를 구체화하고 조문 위치를 수정함(제9조제3항 신설).

○ 질서위반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서관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로 갈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14조 중 “위반”을 “사무처장은 질서 위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자료의 제출) ①·② (생 략) <신 설>	제5조(자료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①·②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제8조(이용자의 범위) 도서관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	제8조(이용자의 범위) ----------. 1. ~ 3. (현행과 같음) 4. ---------- 등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민	제8조(이용자의 범위) (개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장소는 도서관으로 한정하며, 열람·대출시간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 회기 중에는 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에 한정하여 열람·대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대출은 제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제9조(열람 및 대출) ①·② (생 략)	제9조(열람 및 대출) ①·② (개정안과 같음)

해당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대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신 설>	제13조의2(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사무처장은 「도서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 등 도서관 관련 기념일에 맞추어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2(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4조(질서유지) 이용자는 도서관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질서유지) ---------- **사무처장은 질서위반** ------.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등의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등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민”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사무처장은 「도서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 등 도서관 관련 기념일에 맞추어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질서유지) 이용자는 도서관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질서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자의 범위) 도서관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	제8조(이용자의 범위) ---------- ----------. 1. ~ 3. (현행과 같음) 4. ---------- 등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민
제9조(열람 및 대출) ①・② (생략)	제9조(열람 및 대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신 설>	제13조의2(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사무처장은 「도서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 등 도서관 관련 기념일에 맞추어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질서유지) 이용자는 도서관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질서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